

# 2022년도 제1회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22. 04. 0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 1. 세입예산

○ 없음

###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3,937	8,889	5,049	56.8%
일반회계	89	89	-	-
행정운영경비	89	89	-	-
도시개발특별회계	13,849	8,800	5,049	57.4%
사 업 비	13,849	8,800	5,049	57.4%

## II.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 원)

세부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5,562	4,100	1,462	35.7%
국고보조금 반환	3,587	-	3,587	순증

### Ⅲ. 검토의견

- 공공개발기획단의 '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88억 원)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만 50억 4천9백만 원 증액(57.4%)된 138억 4천9백만 원으로,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14억 6천2백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35억 8천7백만 원을 각각 증액하려는 것임.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은 송현동의 높은 역사적 의미와 장소적 가치, 문화적 활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향후 복합문화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임. 서울시는 작년 말('21.12.24.) 대한항공, LH와 함께 제3자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금년 7월 송현동 부지의 관리권한을 확보한 후<sup>1)</sup> '25년 착공 전까지 열린 공간으로 임시개방하기 위하여 14억 6천2백만 원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현재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임.

####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추경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비 고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사업	5,562	4,100	1,462	<기정예산> · 서울의료원 부지 철거비용(3,900) · 설계공모 관련 보상비(200)

#### 〈세부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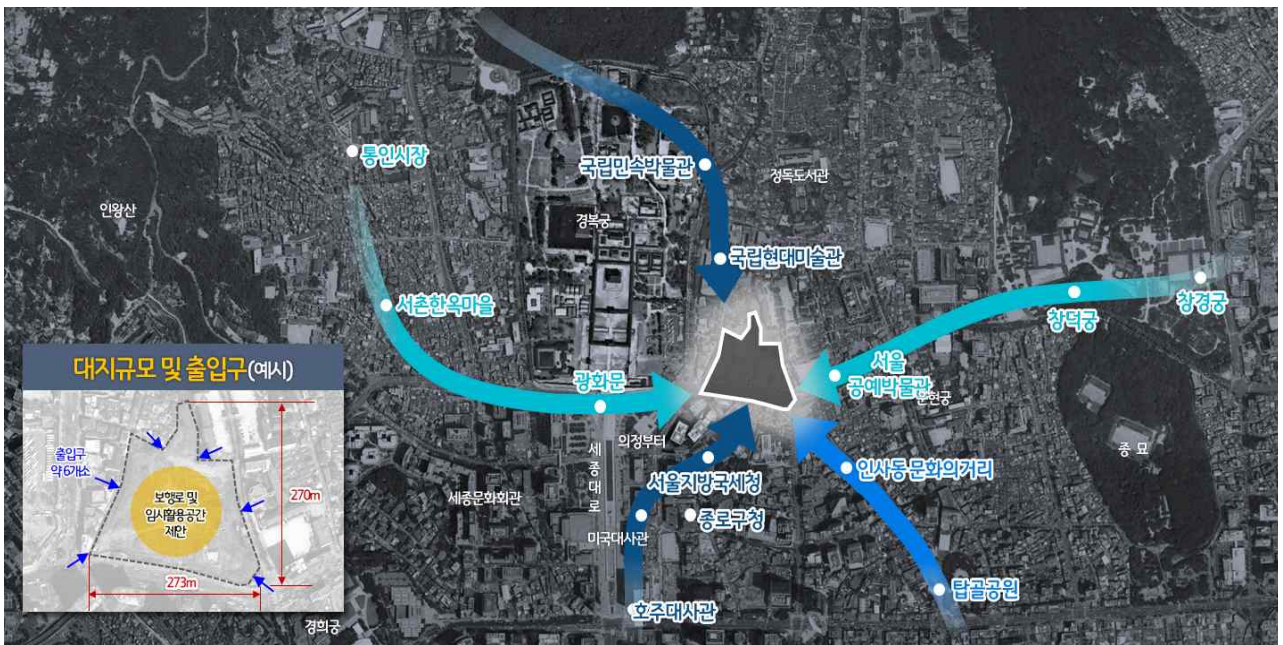
구분	세부사업명	추경요청액	비고
<b>합 계</b>		<b>1,462</b>	
공간조성 (개방전)	송현동 임시개방부지 휴게시설 설치 및 포장 공사	569	종로구 재배정
	송현동 임시개방부지 영상감시장치(CCTV) 및 가로등 설치 공사	628	
운영·관리 (개방후)	송현동 임시개방부지 시설관리 용역	140	
	송현동 임시개방부지 경비 및 청소 용역	125	

※ 붙임. 송현열린공간 조성 및 관리계획 참고

1) 3자 합의서에 따르면 LH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서울시가 토지를 관리함.  
 - '22년 7월 대한항공에서 LH로 소유권 이전 후, 9월중 LH에서 서울시로 소유권 이전(취득)예정

## 〈임시 활용(안)〉

- 위 치 : 송현동 48-9 일대 (37,141㎡)
- 임시활용: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공간 시민 개방 ('22년~'24년)
  - 시민개방 행사('22.7월) : 담장 철거 퍼포먼스 및 송현지름길 개통
    - 4m이상 높은 담장과 도심 흉물로 방치된 송현동 시민의 품으로, 북촌 잇는 새길 조성
  - 일상적 휴식과 이벤트 개최로 테마별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 (프리)비엔날레, 정원박람회, 이견희 소장품 전시회, 역사산책 등
    - 시민 아이디어 공모/기업 사회공헌 유치/시·종로구, 문화재단 협업체계 구축



- ‘국고보조금 반환’은 ‘16~’17년 교부받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4대 핵심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확정(’21.10.)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반납액 및 반납이자를 산출하여 반납하려는 것임. 이는 4대 핵심사업 중 3개 사업(피어테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2차례 부결되었기 때문임(’17.12.15./’18.9.14.). 당시 소관부서(도시재생실 공공개발센터)에서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해 영향성 검토용역(’18.2.~6.)을 시행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사업정상화에 실패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사업실

패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심사결과〉

- `17.12.15.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09-02245) 심사결과 지적사항
  -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사업과 한강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및 한강 피어테크 조성 사업 등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저해 및 위탁개발방식의 적정성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인근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 가능성,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정성 문제 등
- `18. 9.1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10-00037) 심사결과 지적사항
  - 한강 여의테라스(여의마루) 조성사업의 건과 한강 복합문화시설(아리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건 및 한강피어테크 조성사업의 건 등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저해 및 위탁개발방식의 적정성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 가능성,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한강 관광자원화사업(4대 핵심사업) 개요〉

- 위 치 :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여의나루 인근 수변부 및 제방상부)
- 규 모 : 건축물 연면적 25,153㎡, 부유체 면적 12,297㎡
- 사 업 비: 1,896.4억원(국비 596.1, 시비 597.9, 민자(위탁개발) 702.4)
- 주요내용
  - 통합선착장 : 관공선 등 통합기능 선착장 조성 [부유체 6,747㎡+상부구조물 1,653㎡]
  - 피어테크 : 선착장과 연계한 수변집객시설 조성 [부유체 5,550㎡+상부축물 7,000㎡]
  - 여의테라스 : 윤중로변 수변상업가로 조성 [건축연면적 8,500㎡]
  - 복합문화시설 : 한강변 시민문화 향유공간 제공 [지상2층, 건축연면적 8,000㎡]

〈한강 관광자원화사업(4대 핵심사업) 예산집행 현황〉

구 분	집행 현황				반납액(원금) (A+B)	소관부서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A)	불인정액 (B)		
합계	9,867,000,000	1,249,390,730	8,617,609,270	435,628,500	9,053,237,770	
통합선착장	6,360,000,000	935,728,730	5,424,271,270	321,466,500	5,745,737,770	한강사업 본부
피어테크	1,277,000,000	71,512,000	1,205,488,000	71,512,000 <sup>2)</sup>	1,277,000,000	공공개발 기획단
여의테라스	1,000,000,000	99,500,000	900,500,000	-	900,500,000	
복합문화시설	1,230,000,000	142,650,000	1,087,350,000	42,650,000 <sup>3)</sup>	1,130,000,000	

2)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1,512천원 집행하였으나, 보조금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불인정

3) 타당성조사비 및 설계공모관리용역비 등 42,650천원 집행하였으나, 보조금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불인정

※ 반납액(원금) 3,307,500,000원 + 이자 279,146,300원 = 3,586,646,300원(추경편성요청)

담당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지현
연락처	02-2180-8216
이메일	cjh1786@seoul.go.kr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 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동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동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19 공공편익시설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 설치비
  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5.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공간 조성**

**① (원상회복) 부지 평탄화 및 건축물·담장 철거 등 (대한항공)**

- (목적)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통보('11.1.6) 이후 원상회복 및 대지 조성
- (조성방안)
  - (부지 평탄화) 내부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야를 가리지 않는 경사면 처리 및 기존건축물 철거
  - (배수 처리) 우수유출방지를 위한 우수처리계획 검토 및 배수처리시설 설치
  - (담장 조성) 기존 돌담장 일부(90cm) 존치하여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높이의 낮은 돌담장(돌담+기와) 형태로 조성
  - (출입구) 보행로 출입구 6개소
- (기간) '22.3~'22.6.
- (공사비) 없음 ※ 대한항공 부담
  - \* (관련 근거) 3자 합의서 제2조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철거] “대한항공”은 표시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대한항공”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전히 철거하고, 폐기물, 오염물질, 지장물 등도 완전히 제거한 나대지 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 ※ 세부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편의시설) 보행로 및 이벤트공간 조성, 휴게시설 설치 등**

- (목적) 임시개방부지 이용시민들의 쉼터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규모) 보행로 조성(폭4m, 연장 710m, 이벤트 공간(36,642㎡, 파쇄석, 마사토 등), 공공그늘막, 벤치 등 휴게시설 등
- (기간) '22.4~'22.6.
- (공사비) 569백만원 (자치구 재배정)

**③ (조명시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 (목적) 도로변과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규모) 가로등 설치(30분) 및 교체(20분), 보안등 설치(16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및 조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량 산정
- (기간) '22.4~'22.6.
- (공사비) 시비 404백만원 (자치구 재배정)

#### ④ (보안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 (목적)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14개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한 위치에 제한적으로 설치(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기간) '22.4~'22.6.
- (공사비) 시비 224백만원 (자치구 재배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 제16조(권한의 수임)

### ■ 운영 관리

#### ⑤ (관리) 경비·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 배치

- (목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현상유지 및 관리, 시설 출입통제, 순찰 및 민원응대 등 시민 이용에 불편 없도록 관리
- (규모) 경비·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 배치
- (기간) '22.7. ~ '22.12.
- (용역비) 시비 265백만원 (자치구 재배정)